



질의회신

박영모
지방세 운영과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판단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시 등록면허세 감면여부

(Q) 질의내용

농어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용시설(미곡종합처리장) 매입자금 또는 벼 수매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그 융자금을 “영농자금”으로 보아 융자시 제공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에게 융자하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 대출받는 자(농어업인)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라 할 것이며,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 또는 축산자금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정책자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

위는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므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영농자금대출확인서 등에 의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안정자금이나 영농과 별도의 운영자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나. 지방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의 적용시점은 그 해석 또는 결정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영농자금 대출확인서 등에 의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행정자치부 세정-310, 2005.4.20)하도록 기 통보되었으며, 그 후 새로운 유권해석 또는 결정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법령적용 착오에 의하여 기 납부된 등록면허세(등록세)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지방세운영과-1014, 2011. 3. 4.】

2. 분할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시 감면여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신설한 법인이 승계하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면제되는지 여부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 제9호에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만 있음
 나. 「지방세법」 제23조에서 등록면허세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경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판결)으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의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더라도
- 라.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045, 2011. 3. 8.】

3. 금융투자업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그 금융투자업의 종류로 투자매매업, 투자증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열거된 업종 전부를 각각 별개의 인가로 보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면허세”라 함)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자본시장통합법」 제12조에서 “금융투자업의 인가”는 투자자 · 투자상품 · 금융투자업 종류별로 금융기능을 조합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면허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별표] 제1종 제114호에서는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규정하면서 따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는 1건의 면허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044, 2011. 3. 8.】

4. 영유아보육시설 재산세 감면 여부



소유자와 운영자가 상이한 경우 영유아 보육시설의 재산세 감면 여부



- 가. 구(舊)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영유아보육시설의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당해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직접사용 부동산”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원심사결정(2008-182호, 2008.6.12 등), 조세심판원심판결정(2010-608호 2010.12.30) 참조]
- 다. 귀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이외의 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당해 부동산은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운영과-1069, 2011. 3. 9.】

5.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전시 압류해제여부



(Q) 질의내용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압류해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가.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시킨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에 대한 사행행위의 취소 및 일탈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은 채권자와 당해 부동산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발생할 뿐이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익자인 제3자에게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판례이므로,
- 나. 압류해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다. 이 사건의 경우 증여자의 채권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처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수증자의 소유권에 대한 원상회복판결을 받은 이상, 지방세기본법 제9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에 해당되어 이를 달리볼 여지가 없으므로 압류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1171, 2011. 3. 14.】

6.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우선징수

(Q) 질의내용

과세기관이 소유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세자가 소유하는 특정채권(PF자금대출채권 20억원, 금융기관의 질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음)을 압류한 경우 당해세는 압류원인인 전체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인지 아니면 특정채권이 미치는 토지에만 부과된 재산세인지 여부

(A) 회신내용

- 가.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동조 제5항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세목 중 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즉 당해세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투자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 나. 과세기관이 전체 토지 9필지에 대하여 재산세(13억6천만원)를 부과하고 그 재산세를 체납함에 따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납세자의 채권(PF자금대출채권)을 압류한 것인 이상, 당해세의 범위는 채권이 미치는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원인인 전체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방세운영과-1184, 2011. 3. 15.】

7. 외투기업 감면대상인 “신고한 사업” 적용범위

(Q)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의 적용범위

(A)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만을 한정 한다 할 것이며
-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



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무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제출되는 조세감면신청서류는 조세감면을 받기위한 기본적인 서류로서 조세감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조세감면 신청서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한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만을한정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운영과-1210, 2011. 3. 16.】

8.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경과규정 효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준 시장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사업에 “직접사용 하는 부동산” 및 “감면대상”의 범위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2항에서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준의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를 감면 대상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구성하는 “대인적 감면”과 과세대상 물건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구성하는 “대물적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3항의 추징 규정은 시장정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시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조건부 과세권유보”라 할 것으로, 지방세법상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감면대상자를 특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제3자가 아닌 그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감면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입법취지 및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의 해당규정에 비추어 사용용도 측면에서 직접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다. 지방세특례한법 제83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은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이라 규정하고 있고, 전통시장이란 일정구역안의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 ·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인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 ·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매장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고,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대상은 도매업 ·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와 상업시설, 편의시설을 포함한 상업기반시설 등이 해당된다 할 것으로
- 라.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도 · 소매업은 물론 용역업이라도 시장내의 점포에서 영업을 위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 할 것은 아니라 사료 됩니다.

【지방세운영과-1227, 2011. 3. 17.】

9. 종교단체의 아동복지시설 비과세 여부



파산선고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파산자의 채권자가 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파산선고 이후에 승소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을 경우, 파산후에 과세기관이 파산자에게 부과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자 파산후 파산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내용

- 가.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법원의 사해행위취소결정에 대한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41조(취소의 효과)에서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또한 “채권자취소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대법원판례 1998.5.15. 97다 58316)이라 할 것임
- 다. 이 건의 경우 체납자 “갑” 법인의 부동산소유권이 파산선고 전에 을에게 이전된 후 파산선고 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다시 파산법인인 “갑”에게 이전되어 파산선고당시에는 “을”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될 것이나, 민법 제141조의 규정에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파산선고전부터 파산자인 “갑” 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파산선고당시에도 파산자의 부동산이라 할 것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 할 것임
-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해당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제2항에서는 파산이후에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후의 체납을 원인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적법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압류를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세운영과-1266, 2011. 3. 18.】

10. 조례제정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적법여부

(Q) 질의내용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유예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내용

- 가. 헌법 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또한,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서 지방세 과정 업무에 필요불가결하고 본질적인 권한인 질문검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든지 위임근거규정을 두어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지나 법률위임근거규정없이 법령에서 부여된 본질적 권한을 하위법령(조례)에서 직접 유예(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나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함
- 다. 설사 하위법령에서 규정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법령에서만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의 하위법령인 「세무조사운영규칙」에 법령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면제대상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나 입법체계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
- 라.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서 부여한 질문검사권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직접 유예(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며,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고, 입법체계에 불부합되는 문제 등이 발생되므로 본 개정안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의 유예내용을 제외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지방세운영과-1530, 2011. 4. 2.】

11.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Q 질의내용 1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조정기준”이라 함)에 “가감산특례”의 “적용요령 6) ... 시



장 · 군수가 해당지수의 3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에서 말하는 ‘해당지수’란

(Q) 질의내용 2

층별효용비율을 근거로 가감산율을 조정 적용할 수 있는지

(Q) 질의내용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 적용이 불합리하여 이를 변경하기 위해 조정 기준의 《적용요령》에 따라 해당지수를 30%내에 자체조정하는 경우 시장 · 군수가 별도의 변경고시나 도지사의 승인없이 가감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1

조정기준의 4. 가감산특례 적용요령 6)에서의 “해당지수”는 “가감산율”을 지칭하는 것이며,

(A) 회신내용 2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은 개별물건의 시가변동 등 기타 사유로 시가와의 큰 차이로 시가표준액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조정하는 규정으로, 개별물건의 시가표준액 적용에 불합리성에 대한 조사가 없이 질의에서의 불분명한 층별효용비율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조정기준”의 가감산율이 다르다는 이유를 조정근거로 들어 개별물건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과세권자가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시 · 도 · 지사가 적정한 내부기준을 정하여 “조정기준”에 따라 해당지수의 30%이내에 건물 시가표준액을 조정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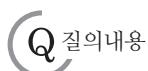
(A) 회신내용 3

건물의 시가표준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기준 범위내에서 시장 · 군수가 자체 조정토록 한 「건물 시

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에서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범위내의 과표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 이 경우 조정결정 후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와 같이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변경결정 및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세운영과-1300, 2011. 3. 21.】

12. 외투기업 감면대상인 “신고한 사업” 적용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의 적용범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만을 한정 한다 할 것이며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무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제출되는 조세감면신청서류는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로서 조세감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조세감면 신청서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한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만을 한정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운영과-1210, 2011. 3. 16.】



13.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당초토지(구로구 항동 149-1)가 보상과정에서 수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매매 계약에 의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을 매매계약이 체결된 각각의 필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날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 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손실을 진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소유자가 토지수용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생활기반 회복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임
- 나.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 매수절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의 손실보상은 사전보상, 현금보상, 개인별보상,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 안에서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 국가가 토지보상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용 목적물이 결정되는 판정 기준일인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한 필지였던 토지가 사업시행자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토지분할을 요청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상금을 가능한 빨리 지급받고자 한 필지의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하여 각각의 토지매수계약을 별 건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신뢰성 및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며
- 라.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동일한 사업지역 내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금 수령 등 사유로 편의상 분할하여 사업시행자와 개별적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금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 보상을 받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방세분야]
질의회신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308, 2011. 3. 21.】 ☎